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5293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민순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태, 김기환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인 B, D이 있으며, 대습상속인으로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2003. 11. 22. 사망)한 망인의 자녀 E의 배우자인 F과 그 자녀인 G이 있다. 결국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9이고, B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나. 피고, B 등 망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은 2016. 12. 10.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9.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12. 10.경까지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128,680원 상당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69,401,460
2015년 9월 정기 재산세(주택), 가산금 포함	242,060
2016년 7월 정기 재산세(주택), 가산금 포함	242,580
2016년 9월 정기 재산세(주택), 가산금 포함	242,580
합계	70,128,6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기 전까지 B에 대하여 합계 70,128,680원

상당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방세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등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실제로 한 2016. 12. 10.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효력발생일인 상속개시일(2016. 7. 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실제로 분할협의를 한 날이 처분행위를 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민법 제1015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의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실제로 한 2016. 12. 10.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2021. 9. 16.자 용인세무서 회신), 이 법원의 용인시,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2. 10.경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건물 제18층 K호	300,000,0001) 사해행위 무렵의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1,107,576,000
용인시 처인구 L, M, N 토지	807,576,0002) 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단가 418,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소극재산	가액(원)	합계(원)
H에 대한 채무	65,000,000	2,180,457,010
대한민국(수원세무서)에 대한 국세 채무	1,111,328,3303) 394,158,700원(2016. 6. 귀속분) + 717,169,630원(2015. 1. 귀속분), 나머지 체납금액은 채무발생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용인시에 대한 지방세 채무	14,000,0004) 회신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명확히 '체납' 표시가 된 금액만을 산정하였다.	
○조합에 대한 채무	270,000,000(채권최고액)	
원고에 대한 지방세 채무	70,128,680	
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50,000,000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기여분(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부채와 댁자리를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에 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 스스로의 사업 활동으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함), 특별수익 등의 존재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B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기여분이나 B의 특별수익 등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성현

별지

- 1) 손해행위 무렵의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2) 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단가 418,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3) 394,158,700원(2016. 6. 귀속분) + 717,169,630원(2015. 1. 귀속분), 나머지 체납금액은 채무발생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 4) 회신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명확히 '체납' 표시가 된 금액만을 산정하였다.